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뒤 쪽)

구 비 서 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
	1.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2.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
[작 성 요 령] 1.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, 별지 제19호서식에 모든 유족(「민법」상 재산상속권자)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. 2. ④란에는 피해자가 신청하려는 명예회복의 유형에 해당하는 난의 □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 3. ⑤란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. 4. ⑥란에는 삼정교육과 관련하여 받은 해고 또는 학사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.		